제113회 해양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

□ **일시·장소**: '24. 11. 18.(월) 16:30 ~ 18:00 /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

□참석자

┌ 황정은.박용철 위원 온라인 참석

O 해양경찰위원회: 길태기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6명

O 해 양 경 찰 청 : 경비국장, 안건 소관 과·계장, 위원회담당관 등 6명

□ 개최 결과: 심의·의결 4건(수정의결 3, 원안의결 1)【심의·의결 4건】

연번	형식	안 건 명	내 용	심의 결과	부서
1	년 6년	「해양경찰악대 운영규칙」제정안	·해양경찰악대의 구성과 역할, 임무, 홍보지원활동 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 ※ (주요내용) △ 악대 편성 및 운영 △ 악대 활동 내용 및 범위 △ 악대원의 근무, 복제, 교육훈련 등 ←정사행 해양경찰악대 설치근거 신설·규정	수정 의결	대변인
			※ 제4조(설치) 해양경찰악대는 해양경찰청에 설치하여 운영한다.		
2	대령	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	•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 ※ (기존) 첫째자녀: 최대1년, 둘째 이후: 휴직기간 전체 (개선) 자녀무관, 휴직기간(자녀당 최대 3년) 전체 •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대상 확대 ※ (기존) 질병·출산·육아휴직, 재난대응 출장·파견 등 업무대행자 (개선) 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든 업무대행자	원안 의결	인사
3	훈령	「해양경찰청 특공대 운영규칙」전부개정안	·비공개 행정규칙 ∗「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」제61조에 따른 보안	수정 의결	경비 작전
4	훈령	「해양경찰 대테러활동 세부운영 규칙」 일부개정안	조치(참석인원 제한, 녹음기 등 사용제한, 서약서 징구 등) 후 회의 진행	수정 의결	경비 작전